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80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장기요양인정 시 등에 이중돌봄 상황 고려	2

I. 개요

1.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80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0. 29.

(3) 회 부 일 : 2025. 10.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장기요양인정 시 등에 이중돌봄 상황 고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고려사항으로 이중돌봄 상황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인정¹⁾을 위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이하 ‘인정조사’라 함) 시 이중돌봄 가정에 대해서는 돌봄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며, 등급판정을 위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때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시 고려사항으로 이중돌봄 상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신설,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생략)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 <u>선택</u>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 ----- <u>선택과 이중돌봄(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u>

1) 가입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5조(등급판정 등) ①・② (생략)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u>관계인의</u>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	<u>장애,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 상황 등을</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u>3.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 조사</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등급판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관계인으로</u> <u>부터</u>-----<u>있으며, 이 때 이</u> <u>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에 대한</u> <u>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 -----
--	--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 야 한다. 1. 2. (생 략) <신 설> 3. (생 략)	----- ----- -----. 1. 2. (현행과 같음) 3.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 4. (현행 제3호와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장기요양급여 수급 절차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개시되는데,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짐²⁾.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90개 항목을 기준으로 인정조사³⁾를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비용부담방법·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

실시하고,

이후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인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인정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⁴⁾하게 됨.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서⁵⁾,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의 교부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를 통보함.⁶⁾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5)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노인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구분	주요 내용
인정 신청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의사소견서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
인정 조사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90개 항목 및 특기사항
등급 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설치 단위: 전국 시·군·구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위원회별 15인 규모(위원장 포함)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등급)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교부 및 서비스 이용(급여 제공)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불인정(등급外)자: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안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2025.11.)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Ⅲ-3)」, 2025.4.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이중돌봄이란 한 세대 내에서 혹은 세대에 걸쳐서 둘 이상의 대상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개념화한 용어⁷⁾로, 2025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가족센터,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오프라인·온라인 설문지 조사(816부)를 시행한 결과⁸⁾를 살펴보면, 4명 중 1명이 이중돌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중돌봄이 주는 힘듦의 정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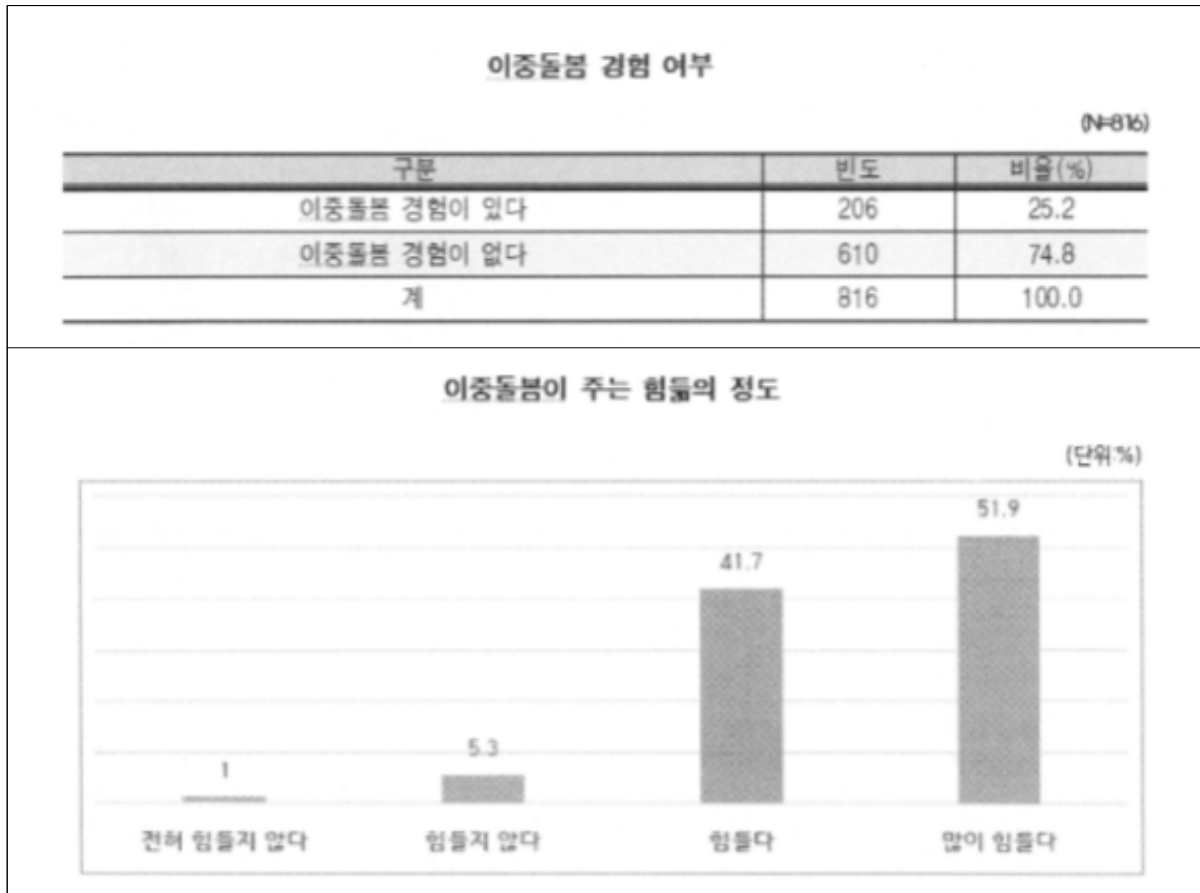
6) 참고.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인정 관련 절차

7) 정춘생 의원 주관 국회 토론회 ‘이중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2025.9.12.

8) 정춘생 의원 주관 국회 토론회 ‘이중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2025.9.12.

질의에 대하여 ‘힘들다’ 또는 ‘많이 힘들다’라는 답변이 93.6%에 달함.

< 이중돌봄 경험 여부 및 이중돌봄이 주는 힘듦의 정도 >



자료 : 정춘생 의원 주관 국회 토론회 ‘이중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2025.9.12.

-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관련 절차(인정조사, 등급판정 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등)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중돌봄 상황을 별도로 명시하여 특별히 고려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현행법령 및 관련 지침 등9)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
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이하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9. 29.>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1. 일반사항

⑥ 동거인	현재 신청인과 동거하는 자에 대해 복수표시 가능			
	[] 독거 [] 손자녀	[] 부부 [] 친척	[] 부모 [] 친구·이웃	[]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입소시설 관계자 [] 기타()

<참고사항>

(제1쪽 뒷면)

2.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 신청인의 기능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의 해당란에 √ 표로 표시함.

○ 각 항목 아래의 빈칸에 특기사항을 기록함.

아. 지원형태

① 주 수발자	[] 없음 [] 배우자 [] 부모 []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손자녀 [] 친척 [] 친구·이웃 [] 간병인 [] 자원봉사자 [] 기타()
---------	--

② 주 수발자의 도움영역	[] 신체기능 [] 사회생활기능 [] 정서적 지지
---------------	--------------------------------

③ 하루 종일 혼자 있음	[] 예 [] 아니오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 2) 인정조사영역별 판단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인정조사영역</th><th>조사방법</th></tr> </thead> <tbody> <tr> <td>1. 신체기능영역 (13개항목)</td><td>-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항목의 행위를 도울일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 - 최근 1개월간의 생활을 종합하여 기능자답정도를 판단</td></tr> <tr> <td>2. 인지기능영역 (10개항목)</td><td>- 최근 1개월간의 생활을 종합하여 중상이부를 판단 - 가족 등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 - 독거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신중하게 판단</td></tr> <tr> <td>3. 행동변화영역 (22개항목)</td><td>- 학의 작용 여부에 상관없이 중상의 유무로 판단 - 의사소통단란 판단할 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각 항목에 대해 비교적 대상자의 허사를 이해하여 가짜이서 둔바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 후 특기사항에 자세히 기재</td></tr> <tr> <td>4. 간호치료영역 (10개항목)</td><td>- 최근 2주간의 처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td></tr> <tr> <td>5. 제형영역 (10개항목)</td><td>- 신청인이 수행하도록 한 후 운동장애정도, 관절제한정도 판단 - 의지를 적용한 상태에서 판단</td></tr> </tbody> </table> 3) 인정조사 항목별 판단기준 - 별책 장기요양인정조사 핸드북에 따름 4)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항목별 특기사항 기재요령 조사하는 동안 조사항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특기사항’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상태를 기재하여 추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인정조사영역	조사방법	1. 신체기능영역 (13개항목)	-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항목의 행위를 도울일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 - 최근 1개월간의 생활을 종합하여 기능자답정도를 판단	2. 인지기능영역 (10개항목)	- 최근 1개월간의 생활을 종합하여 중상이부를 판단 - 가족 등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 - 독거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신중하게 판단	3. 행동변화영역 (22개항목)	- 학의 작용 여부에 상관없이 중상의 유무로 판단 - 의사소통단란 판단할 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각 항목에 대해 비교적 대상자의 허사를 이해하여 가짜이서 둔바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 후 특기사항에 자세히 기재	4. 간호치료영역 (10개항목)	- 최근 2주간의 처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	5. 제형영역 (10개항목)	- 신청인이 수행하도록 한 후 운동장애정도, 관절제한정도 판단 - 의지를 적용한 상태에서 판단	3. 조사결과 업무처리 가. 인정조사표 작성 관련 업무처리절차 1) 참고사항 및 특기사항은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 기재함 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 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 구체적인 빈도와 횟수를 기재 다)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시 검토의 대상이 되는 부분 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신청인의 질병이나 상태 마) 경고코드를 확인하여 상반된 조사 결과 등이 있는지 확인 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상태 및 욕구사항 사) 기타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요양욕구 등과 관계된 항목별 참고사항 2) 인정조사 내용 중에 누락되거나 중복 체크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함 3) 참고사항 및 특기사항 기재요령 가) 참고사항 기재요령 (1) 참고사항은 신청인의 주요병력, 기능상태, <u>수발환경</u> 등을 종합하여 기재함
인정조사영역	조사방법												
1. 신체기능영역 (13개항목)	-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항목의 행위를 도울일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 - 최근 1개월간의 생활을 종합하여 기능자답정도를 판단												
2. 인지기능영역 (10개항목)	- 최근 1개월간의 생활을 종합하여 중상이부를 판단 - 가족 등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 - 독거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신중하게 판단												
3. 행동변화영역 (22개항목)	- 학의 작용 여부에 상관없이 중상의 유무로 판단 - 의사소통단란 판단할 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각 항목에 대해 비교적 대상자의 허사를 이해하여 가짜이서 둔바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 후 특기사항에 자세히 기재												
4. 간호치료영역 (10개항목)	- 최근 2주간의 처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												
5. 제형영역 (10개항목)	- 신청인이 수행하도록 한 후 운동장애정도, 관절제한정도 판단 - 의지를 적용한 상태에서 판단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에도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돌봄 상황 역시 생활환경의 한 요소로서 반영될 수 있고, 인정조사 단계에서 이미 동거인 및 주수발자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 이중돌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 시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신청인과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중돌봄 상황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생활환경’에는 주거형태,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중돌봄 상황만을 특정하여 법률에서 별도로 명시할 경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개별적 입법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급여 제공(안 제3조) 및 장기요양인정서 작성(안 제18조) 시, 수급자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기 규정 중으로, ‘생활환경’ 범위에 포함되는 ‘이중돌봄’ 상황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시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상황을 조사(안 제14조)하도록 하는 것도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독거, 손자녀, 부부, 친척, 부모, 친구·이웃 등과의 동거 여부 포함)를 통해 신청자의 돌봄 상황에 대한 조사가 가

능할뿐만 아니라 '26년 인정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시 '수발환경(이중돌봄 등)' 작성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을 추가하였으며, 등급판정 시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상황 관련 의견을 청취(안 제 15조)하도록 하는 것은 등급판정 기준의 '생활환경' 범위에 포함되는 '이중돌봄' 상황을 구체화하여 별도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 돌봄 부담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이중돌봄 가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스스로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자립적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적정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이를 위해 인정조사, 등급판정 등에서 심신상태와 동거인을 포함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얻는 실효성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 이중돌봄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장기요양 필요도는 같음에도 가족구조, 돌봄 형태에 따라 이용 기회나 지원 강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점, 이중돌봄을 고려한 급여 확대는 수급자 및 서비스 이용 증가,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 부담 증가 및 제도 지속 가능성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중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은 육아·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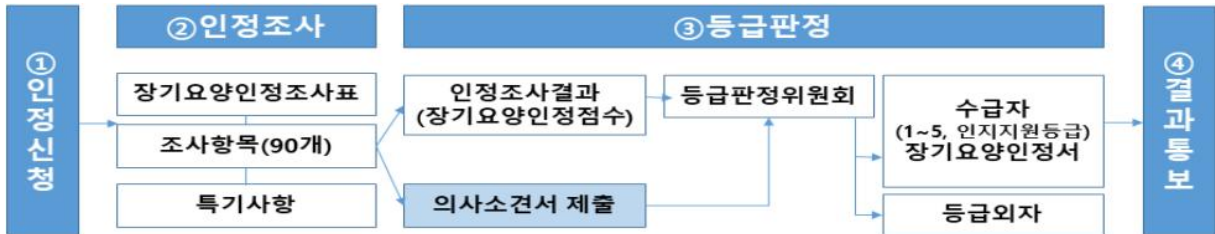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초등·노인·장애 돌봄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요양보험은 그 중 노인 장기요양 영역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

참고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인정 관련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인정 관련 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② 인정조사 실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일반사항(인적사항, 주거상태, 동거인 여부 등), 신체 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영역 등 조사 실시
- 인정조사표 외 방문조사 시 특이사항 및 참고사항 등 구체적으로 확인

③ 등급판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

* 전국 시·군·구 단위로 「등급판정위원회」 설치(위원회별 15인 위원으로 구성)

-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② 사회복지사, ③ 시군구 소속 공무원, ④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결과통보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 등급 인정자(1~5등급, 인지기원등급) 대상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교부 → 서비스 이용

< 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보호급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자료 : 보건복지부